

# 평가강령 실행보고서

2010.12.21

## 들어가는 말

Moody's Investors Service(이하 'Moody's')의 자회사인 한국신용평가(이하 '당사')는 2006년 7월 Moody's의 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이하 'Moody's CoPC')를 토대로 신용평가 프로세스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명시하고 있는 평가강령(KIS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이하 'KIS CoPC')을 제정하였습니다. 당사는 KIS CoPC를 준수함으로써 투자자와 발행사를 공정하게 대우함은 물론 당사가 자체적으로 생성한 기밀정보 혹은 발행사가 당사에 제공한 기밀정보를 보호하고 당사의 평가방법론, 평가정책과 관행 및 그것에 관한 자료에 대해 공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당사 신용평가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증진하고 신용평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KIS CoPC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이하 'IOSCO')의 Code of Conduct Fundamentals for Credit Rating Agencies(이하 'IOSCO Code')에 나와있는 원칙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IOSCO Code의 개정에 맞춰 당사 또한 개정된 IOSCO Code 내용을 반영하여 2009년 8월 KIS CoPC를 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IOSCO Code에 명시된 원칙에 의견을 같이 하며, KIS CoPC를 통해 IOSCO Code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당사는 KIS CoPC의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08년 10월~2010년 9월까지의 KIS CoPC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같은 기간 동안 관련 정책 및 규정의 변경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한국신용평가 평가강령(KIS CoPC) 전문은 홈페이지([www.kisrating.com/](http://www.kisrating.com/)회사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 평가강령과 본 보고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준법감시실 또는 평가정책본부(02-787-22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KIS 및 신용등급 개요

당사는 1985년 국내 최초의 신용평가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질 높은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당사는 특정 채무증권 혹은 그러한 채무증권의 발행사의 신용도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평가등급 및 관련된 연구보고서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어떤 기관, 신용공여(credit commitments) 혹은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에 관한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의견입니다. 신용등급은 두가지 요소로 정의될 수 있는 바, 하나는 만기가 도래한 계약상의 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부도 발생시 채권자가 떠안게 되는 손실금액입니다. 투자자의사결정 과정의 여러가지 속성 중에서 위에서 언급한 속성 이외의 것들, 예를 들어 유동성 위험, 시장가치 위험 또는 가격 변동성 등에 대해서 신용등급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은 특정 채무증권을 매수, 매도 혹은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니며, 특정 투자자가 해당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없습니다. 당사는 각각의 투자자가 매수, 보유 혹은 매도를 고려중인 각 증권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평가할 것이라는 기대와 인식 하에 신용등급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I. 평가강령의 개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신용평가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신용평가사의 시장참여자에 대한 책임 강화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며, 이러한 시장 변화의 반영과 함께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2008년 5월 IOSCO는 신용평가사의 행동규범(IOSCO Code)을 보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Moody' s 또한 IOSCO Code의 개정 내용과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2007년 10월과 2008년 11월 두차례에 걸쳐 Moody' s CoPC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에 맞춰 국내 실정 및 당사 여건을 고려하여 2008년 5월 개정된 IOSCO Code, 2007년과 2008년 개정된 Moody' s CoPC의 내용을 수정, 반영하여 2009년 8월 당사의 CoPC(KIS CoPC)를 새롭게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KIS CoPC는 신용평가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강화함과 동시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신용평가 과정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신용평가를 위한 방법론 및 절차 강화, 이해상충 방지 및 기밀정보 사용 등에 관한 내용 보완, 등급 공시의 적시성과 투명성 제고 등이 주요 개정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KIS CoPC의 주요 개정 내용을 조항별로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용어(Definitions)의 변경, 추가**

기존 KIS CoPC(2006.7)	개정 KIS CoPC(2009.8)
<p>“ 평가정책위원회(The Credit Policy Committee)” 라 함은 각각의 신용평가 그룹을 위하여 핵심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위원회를 의미한다. 이 위원회의 구성멤버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p> <p>(신설)</p>	<p>“ <b>평가정책부서(Credit Policy Group)</b>” 는 각종 채권 및 발행사에 대한 평가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와 분리되어 있는 내부조직이다. 이 부서의 총괄책임자는 CCO(Chief Credit Officer)이며 CCO는 KIS CEO에게 직접 보고한다. 평가정책부서의 주요 업무로는 KIS 등급 퍼포먼스에 대한 리서치, 평가방법론 및 모델에 대한 검토와 승인, 평가 그룹의 주요 정책 및 관행을 결정하는 내부 위원회의 감독 등이 있다.</p> <p>“ <b>신용등급공시(Credit Rating Announcements)</b>” 라 함은 신규등급 부여, 기존 등급의 변경 또는 유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문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보도자료가 있다.</p> <p>“ <b>신용평가 서비스(Credit Rating Services)</b>” 라 함은 신용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산출된 상품과 서비스를 의미하며, 신용등급, 관련 리서치, 데이터 상품 및 관련 분석 툴 등의 생성과 판매를 포함한다.</p> <p>“ <b>부수 서비스(Ancillary Services)</b>” 는 신용평가 프로세스와 관계는 있지만 반드시 신용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산출된 것은 아닌 상품과 서비스를 의미한다.</p> <p>“ <b>비평가 서비스(Non-Rating Services)</b>” 는 신용평가 프로세스와 관계 없는 상품과 서비스를 의미한다.</p>

당사는 과거에도 다른 부서와 독립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정책의 수립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평가정책적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그 명칭(용어)을 “ 평가정책부서” 로 변경하면서 다른 부서와 분리된 조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업무영역과 보고체계 등도 추가하였습니다.

“ 신용평가서비스” 와의 구별을 위해 “ 부서서비스” 와 “ 비평가서비스” 의 의미를 추가하여 이들 업무 간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Section 1.7 - 평가과정의 질(Quality)**

기존 KIS CoPC(2006.7)	개정 KIS CoPC(2009.8)
<p>1.7 KIS는 신용평가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투자한다. 특정 발행사 혹은 증권에 대한 신용평가를 새로 시작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혹은 기존의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를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러한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신용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할 수 있는지도 역시 고려한다.</p> <p>(신설)</p>	<p>1.7 KIS는 신용평가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투자한다. 특정 발행사 혹은 증권에 대한 신용평가를 새로 시작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혹은 기존의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를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러한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신용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할 수 있는지도 역시 고려한다.</p> <p>KIS는 신용등급 부여시 사용하는 정보가 등급의 신뢰도를 확보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특정 구조화 금융상품의 과거 데이터가 제한적이라면 그 상품과 관련된 신용등급을 공시할 때에는 그러한 한계점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명시한다.</p> <p>평가정책부서는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p> <p>1.7.1. 과거에 KIS가 평가했던 구조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에 대한 신용평가의 수행타당성 검토</p> <p>1.7.2 KIS가 사용하는 평가방법론과 모델 및 그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한 정기적 검토</p> <p>1.7.3 구조화 상품의 기초자산의 위험특성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그 상품에 대해 기존의 평가방법론과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 판단</p> <p>구조화 상품이 새롭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KIS는 그 상품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와 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p>

KIS CoPC는 개정 전까지 IOSCO Code에 의거 평가과정의 질적 수준의 유지 및 제고를 위한 일반적인 원칙만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용평가사의 보다 더 특화된 의무와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평가과정이 보다 높은 질적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전에 비해 구체적인 방안들-특히 구조화 상품(Structured Finance)에 있어서-을 명시하였습니다.

즉, 신용평가 과정에서 사용되는 정보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조치와 절차 등을 갖추도록 하였는 바, 여기에는 활용되는 데이터, 방법론 및 모델 등에 대한 적정성과 구조화된 상품(평가대상)에 대한 평가수행 가능성 검토, 그리고 이를 수행, 감독할 독립된 전문부서의 도입 및 충분한 전문인력의 확보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Section 1.10/1.11 - 사후관리(Monitoring and Updating)**

기존 KIS CoPC(2006.7)-Section 1.9	개정 KIS CoPC(2009.8)
<p>1.9 KIS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모든 신용등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한다. 단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신용등급은 예외로 한다.</p> <p>--- 중략 ---</p> <p>1.9.3 상기한 Review의 결과 필요하다면 해당 신용등급을 적시에 조정한다.</p> <p>(신설)</p>	<p>1.10 KIS는 신용등급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인력 및 재원을 할당한다. KIS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모든 신용등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한다. 단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신용등급은 예외로 한다.</p> <p>--- 중략 ---</p> <p>(c) 상기한 Review의 결과 필요하다면 해당 신용등급을 적시에 조정한다.</p> <p>가능한 경우, 신용등급을 사후관리할 때에는 누적된 모든 경험을 반영한다. KIS의 평가기준 및 가정이 변경된 경우, 필요하다면, 변경된 내용을 최초 평가(initial ratings)와 사후평가(subsequent ratings)에 모두 적용한다.</p> <p>1.11 제반 여건이 성숙되었을 경우 KIS는 구조화 금융 상품의 최초 등급 결정과 사후관리에 별개의 분석팀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각 팀은 각각의 기능을 적시에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험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KIS는 또한 적절한 시기에 기존 신용등급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 프로세스 및 시장 동향을 검토한다.</p>

기존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만을 언급한 반면, 개정된 KIS CoPC에서는 사후 평가시에도 최초 평가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적, 물적 투입이 이루어져야 됨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최초 평가시 적용된 방법론 및 가정의 변동 등과 같이 평가방법이 변경될 경우 이를 유효등급 건에 동일하게 반영함으로써 평가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Section 1.17 - 평가과정의 공정성(구조화 금융상품의 설계 제안과 추천 금지)**

기존 KIS CoPC(2006.7)	개정 KIS CoPC(2009.8)
(신설)	1.17 KIS의 애널리스트는 KIS가 평가하는 구조화 금융상품의 설계에 대해 제안하거나 추천하지 못한다. 단, 본 금지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여 애널리스트가 (1) 당해 구조화 금융거래의 고유한 특성 및 발행사(혹은 발행사의 대리인)가 제안한 수정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분석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2) KIS의 평가방법론이 발행사가 제안한 사실 및 특성에 대해 적용될 때 신용평가에 미치게 될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사 또는 그 대리인과 일련의 논의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구조화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구조화 금융상품 평가 시 신용평가사가 상품 설계를 제안하거나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IOSCO Code의 내용에 추가하여 발행사 또는 그 대리인과 어떠한 논의를 할 수 있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실무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Section 2.8/2.11/2.12/2.17 - 독립성 및 이해상충 방지**

기존 KIS CoPC(2006.7)	개정 KIS CoPC(2009.8)
2.8 KIS는 KIS가 평가한 발행사로부터 신용평가 및 관련 리서치가 아닌 다른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수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대상 업체와 체결한 보수약정의 일반적인 성격을 공개한다.  (신설)  2.11 KIS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보고라인과 이들의 보수체계를 정할 때에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문제를 제거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한	2.8 KIS는 평가대상 업체와 체결한 보수약정의 일반적인 성격을 공개한다.  (a) KIS는 컨설팅과 같은 비평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KIS는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 서비스 혹은 부수 서비스와 관련 없는 보수를 받지 않는다. 만일 KIS가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 서비스 혹은 부수 서비스와 관련 없는 보수를 받게 된다면 신용평가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와 비평가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의 비율을 공시할 것이다.  (b) KIS가 특정 개별 발행사(issuer), 자산보유자(originator), 주간사(arranger) 또는 구독자(subscriber)로부터 받는 수입(계열사를 포함한다)이 KIS 연간 총수입의 10%를 초과한다면 그 사실을 공시한다.  2.11. KIS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보고라인과 이들의 보수체계를 정할 때에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문제를 제거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한

<p>다.</p> <p>애널리스트는 자신이 평가하거나 주로 접촉하는 발행사로 부터 벌어들이는 수수료에 근거하여 보상받거나 평가받지 않는다.</p> <p>(신설)</p> <p>2.12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애널리스트들을 제외하고는 신용평가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애널리스트들은 발행사와 평가 수수료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p> <p>(신설)</p>	<p>다.</p> <p>(a)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평가하거나 주로 접촉하는 발행사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수료에 근거하여 보상받거나 평가받지 않는다.</p> <p>(b) KIS는 신용평가 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원들의 급여 정책과 그 관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해당 정책 및 관행이 신용평가 과정의 객관성을 손상시키지 않는지 확인한다.</p> <p>2.12 신용평가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애널리스트들은 발행사와 평가 수수료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평가수수료 체계에 대해 단순히 인지하고 있거나 언급하는 것은 수수료 협상에 해당되지 않는다.</p> <p>2.17. KIS는 애널리스트 혹은 신용평가 과정에 참여하여 타 직원이 KIS를 퇴직한 후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거래가 있었던 발행사 혹은 금융회사로 전직하는 경우 해당 애널리스트 및 직원의 과거 업무를 소급하여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p>
--	---

위의 조항들은 신용평가의 독립성 확보와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된 것으로, 개정 전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신설, 보완됨으로써 실행방안과 내부절차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Section 2.8의 경우 신용평가사와 피평가기관 간 거래관계의 성격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IOSCO Code에 따라 보완된 조항입니다. 특히 비평가서비스의 수입내역과 함께 특정 거래처(또는 피평가기관)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는 수입규모를 공개함으로써 신용평가의 독립성 저하와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신용평가사 직원의 급여 정책에까지 확대 적용된데 이어 KIS CoPC 개정에서는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Section 2.11(b))토록 강화하였습니다.

Section 2.12는 수수료 논의에 있어서 기존에는 경영에 책임이 있는 애널리스트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했으나, 이를 평가절차에 직접 관여하는 모든 애널리스트로 확대함으로써 평가에 관여하는 애널리스트가 수수료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Section 2.17은 개정 IOSCO Code에서 새롭게 신설된 항목을 반영한 것으로, 신용평가의 독립성 내지 이해상충과 관련하여 그동안 사전적 또는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지던 실행방안과 내부절차를 사후적으로도 소급, 확장하여 과거 평가내역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Section 3.3 - 구조화 상품 관련 정보의 공시 장려**

기존 KIS CoPC(2006.7)	개정 KIS CoPC(2009.8)
(신설)	3.3 KIS는 구조화 금융상품의 발행사 및 자산보유자들에게 해당 상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시하도록 장려한다.

개정 IOSCO Code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rating shopping’ 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 신용평가산업에 속한 모든 기관이 구조화 금융상품의 발행자들(structured finance issuers)과 자산보유자들(originators of structured finance products)에게 상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Section 3.3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신설된 조항입니다.

즉, 신용평가사가 구조화 금융상품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 공시의 의무를 강제할 수 없지만, 신용평가사가 신뢰성 높은 평가를 통해 독립적인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투자자들 또한 관련 상품의 장단점에 입각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정보가 공시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장려하라는 것입니다.

**Section 3.6 - 과거 등급현황과 적용 평가방법론 명시**

기존 KIS CoPC(2006.7)	개정 KIS CoPC(2009.8)
3.5 신용등급과 관련한 모든 보도자료에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관련 Rating Action을 언급한다.  (신설)	3.6 KIS는 모든 신용등급 공시자료에:  (a)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관련 신용등급 공시 일자 및 공시한 주요 action을 포함하고,  (b) 신용등급 결정 과정에서 사용한 주요 평가방법론 혹은 평가방법론의 버전, 그리고 그 평가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명시한다. KIS는 해당 신용등급이 하나 이상의 평가방법론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융시장의 전문가들이 단 하나의 평가방법론만을 검토할 경우 해당 신용등급의 여타 중요한 요인들을 간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신용평가 과정에서 고려한 여타 중요한 요인들 및 다른 평가방법론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를 명시한다.

신용평가가 어떤 평가방법론이 적용되었고, 방법론적인 구체적인 절차와 접근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금융시장 관계자들에 있어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평가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용이하도록 관련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방법론 현



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평가강령의 실행 현황을 참조(‘ 평가방법론의 개발, 갱신 및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Section 3.7 - 신용평가에 관한 정보**

기존 KIS CoPC(2006.7)	개정 KIS CoPC(2009.8)
<p>3.6 KIS는 평가절차, 평가방법론에 관한 정보는 물론 발행사가 공시한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정보와 크게 차이 나는 정보가 있을 경우 그러한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전문가들이 신용등급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p> <p>(신설)</p>	<p>3.7 KIS는 <b>평가위원회 프로세스</b>, 평가절차, 평가방법론에 관한 정보는 물론 발행사가 공시한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정보와 크게 차이가 나는 정보가 있을 경우 그러한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전문가들이 신용등급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p> <p>(a) KIS는 구조화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평가 관련 손실기대치 및 현금흐름분석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 금융시장 전문가가 해당 신용등급에 대한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b>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b>, KIS는 구조화 금융상품 평가과정에서 수립하였던 기본 가정조건이 변동될 경우 신용등급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일 것인지 그 민감도를 분석하여 공시한다.</p> <p>(b) KIS는 현재 구조화 금융상품의 신용등급과 기타 자산에 부여하는 신용등급에 별개의 등급 체계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만약 KIS가 구조화 금융상품 신용등급에 대해 별개의 등급 체계를 채택하게 된다면 (i) 그러한 사실을 시장에 공표하는 동시에 (ii) 별개의 등급기호의 이용방법과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할 것이다. KIS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등급 기호에 대한 정의는 KIS의 홈페이지(<a href="http://www.kisrating.com">www.kisrating.com</a>)에 공시되어 있다.</p> <p>(c) KIS는 신용등급의 속성 및 한계에 대해 명시하며, 평가대상 증권의 발행사 혹은 자산보유자가 KIS에 제공한 정보에 대해 검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러한 정보는 신용등급이 무엇인가에 대해 투자자들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p>

개정 IOSCO Code는 신용등급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관해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 정보 중 특히 구조화 금융상품 평가와 관련한 항목-현금흐름분석, 손실기대치 등에 대한 정보-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사에서 부여하는 신용등급의 일반적인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 Section 3.7(a)와 (c) 입니다.

Section 3.7(b)에 관해서는 ‘ KIS CoPC와 IOSCO Code와의 차이’ 를 참조하십시오.

**Section 3.11 - 신용등급에 관한 Historical Performance 제공**

기존 KIS CoPC(2006.7)	개정 KIS CoPC(2009.8)
<p>3.10 신용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신용등급의 총체적인 성과에 대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KIS는 등급별 부도율, 등급 전이율, 그리고 기간별 성과지표를 공시한다.</p> <p>(신설)</p>	<p>3.11 신용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신용등급의 총체적인 성과에 대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KIS는 등급별 부도율, 등급 전이율, 그리고 기간별 성과지표를 공시한다.</p> <p>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정보는 신용등급의 performance에 관해 검증가능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과거 정보를 체계화, 구조화, 표준화시킴으로써 금융 전문가들이 신용평가기관의 performance를 상호 비교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p> <p>규제 당국이 KIS에 요청하는 경우, KIS는 규제 당국이 신용등급 performance에 대해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제당국에 등급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다.</p>

신용평가의 투명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투자자들로 하여금 신용평가사의 평가성과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각 신용평가사들의 평가성과를 상호 비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가능하면 계량화된 지표에 의한 표준화를 통해 정리, 구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I. 평가강령의 실행 현황**

**평가과정의 질 및 공정성**

**평가방법론의 개발, 갱신 및 적용 - Section 1.2/1.3**

당사는 2~3년 주기로 평가방법론에 대한 개정/보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내부 모니터링 절차에 의견한 기존 평가방법론에 대한 점검이나 실제 평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방법론상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평가방법론의 갱신 내지 신규 개발 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론은 평가정책본부 주관 하에 내부 회의와 검토, 그리고 승인 절차를 거친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방법론 체계가 도입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당사의 부문별 평가방법론의 신규, 개정 현황을 보면, 평가방법론의 유의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그 결과를 반영한 신규 개발 및 갱신이 매년

평가강령 실행보고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아래 표 참조). 특히 평가방법론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이 기존 평가방법론 대비 변경된 내용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론 서두에 주요 변경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평가방법론 공시방법을 개선,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법론(‘현행’으로 표기)과 과거의 평가방법론(‘중전’으로 표기)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KIS 평가방법론 신규, 개정 현황]

부문	방법론	2006	2007	2008	2009	2010
산업	제조업	-	-	-	-	신규-예정
	주류	신규	-	-	갱신	-
	음식료	-	신규	-	갱신	-
	해운	신규	-	-	갱신	-
	유통	신규	-	-	갱신	-
	철강	신규	-	-	갱신	-
	병원	-	-	-	신규	-
	정유	신규	-	-	갱신	-
	석유화학	-	신규	-	갱신	-
	건설	신규	-	-	갱신	-
	자동차	-	-	신규	-	-
	자동차부품	-	신규	-	-	-
	전선	-	-	신규	-	-
	의류	신규	-	갱신	-	-
	전자	신규	-	갱신	-	-
	항공운송	-	신규	-	-	갱신-예정
	호텔/숙박	-	신규	-	-	-
	도시가스	-	신규	-	-	-
	SI	신규	-	-	-	갱신-예정
	조선	신규	-	-	-	갱신-예정
	공공	신규	-	-	-	-
	통신	신규	-	-	-	갱신-예정
제약	신규	-	-	-	-	
시멘트	신규	-	-	-	갱신-예정	
기계	-	-	-	-	신규-예정	
금융	은행	신규	-	-	갱신	-
	증권	신규	-	갱신	-	갱신-예정
	상호저축은행	-	신규	-	-	-
	할부/리스금융	-	신규	-	-	-
	신용카드	신규	-	-	-	갱신-예정

평가강령 실행보고서

	보험	신규	-	-	-	-
SF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및 평가	신규	-	-	-	-
	Credit Facility	신규	-	-	-	-
	오토론 유동화	신규	-	-	-	갱신
	기업매출채권 유동화	신규	-	-	-	-
	ABCP 프로그램	신규	-	-	-	갱신
	장래채권	신규	-	-	-	갱신
	PF Loan 유동화	신규	-	-	-	갱신
	Synthetic CDO	-	신규	-	-	갱신
	CDO	신규	-	-	갱신	-
	MBS	신규	-	-	갱신	-
	CMBS	신규	-	-	갱신	-
	NPL ABS	신규	-	-	갱신	-
PF	Loan Rating 일반	-	-	-	신규	-
	유료도로 Loan Rating	-	-	-	신규	-
	주거용 부동산개발사업 Loan Rating	-	-	-	신규	-
	비주거용 부동산개발사업 Loan Rating	-	-	-	신규	-
	프로젝트파이낸스 Loan Rating	-	-	-	신규	-
	부동산 PF Loan Rating	신규	-	-	갱신	-
	Object Finance Loan Rating	-	-	-	신규	-
	BTL Loan Rating	-	-	-	-	신규-예정
	골프장 개발사업 Loan Rating	-	-	-	-	신규-예정
	산업단지 개발사업 Loan Rating	-	-	-	-	신규-예정
일반	Corporate 신용평가 일반	신규	-	-	-	-
	지주회사	-	-	-	신규	-
	계열분석	신규	-	-	-	-
	재무분석	신규	-	-	-	-
	영업분석	신규	-	-	-	-
	산업분석	신규	-	-	-	-
	현금흐름	-	-	-	신규	-
	유동성위험 분석	신규	-	갱신	-	-
	경기변동과 신용평가	신규	-	-	-	-
	부외부채와 신용평가	신규	-	-	-	-
	합병 및 분할과 신용등급	신규	-	-	-	-
	Foreign Currency Rating	-	-	-	신규	-
	Sovereign Rating	-	-	-	-	신규-예정

주) 2010년 ' 예정' 으로 표시된 것은 당사 내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어 2010년 12월 말까지 공시가 될 것임을 의미.

**평가정책부서의 독립 및 기능 강화 – 용어(Definitions), Section 1.7**

당사는 평가정책부서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10년 7월 대표이사 직속 부서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절차에 관한 원칙 수립, 평가방법론의 검토 및 승인, 새로운 구조에 대한 신용평가의 수행타당성 검토, 기초자산 위험 특성 변화시 구조화 상품 방법론의 적합여부 판단 등을 관장하고, 각 부문별 평가그룹의 주요 정책 및 관행을 결정하는 내부 위원회를 감독토록 함으로써 각 부문별 평가부서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어떠한 부서와도 독립된 부서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독립성 및 이해상충 방지**

**이해상충관리위원회 운용 - Section 2.5**

당사는 신용평가 업무 이외에 컨설팅 등과 같은 신용평가 프로세스와 관계없는 비평가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평가 프로세스와 관련되기는 하나 반드시 그것에서 비롯되었다고 규정할 수 없는 부수업무-당사 Project Finance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에 대한 원리금상환가능성 평가가 이에 해당-를 하고 있습니다(KIS CoPC ‘ 용어의 정의’ 참조).

이에 당사의 부수업무와 신용평가업무 간 이해상충이 발생될 소지는 크지 않지만, 이들 업무 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IOSCO Code의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KIS CoPC Section 2.5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당사는 신용평가와 부수업무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서 ‘ 이해상충관리위원회’ 를 운용해오고 있습니다.

기존 KIS CoPC(2006.7)	개정 KIS CoPC(2009.8)
2.5 KIS는 “ 평가 이외의 서비스에 관한 내부정책” 에 의거하여 신용평가사업 및 애널리스트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사업으로부터 분리시킨다. 평가위원회 구성원들은 신용평가 대상인 발행사에게 신용평가 이외의 서비스를 판매 또는 제공할 수 없다. KIS는 기존 또는 장래의 부수적 사업운영이 KIS의 신용평가사업과 반드시 이해상충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와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2.5 KIS는 자사의 신용평가 서비스 및 애널리스트들을 비평가 서비스, 컨설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여타 사업으로부터 업무상, 법률상 분리시킨다. KIS의 신용평가 서비스와 반드시 이해상충을 초래하지 않는 부수 서비스에 대해서도 KIS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거나, 그러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절차 및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부수 서비스(Ancillary Services)가 의미하는 바는 본 평가강령 “ 1. 용어의 정의” 에 기술되어 있다.

동 위원회에서는 당사의 신용평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부수서비스인 원리금상환가능성 평가를 의뢰한 경우 또는 부수서비스를 제공받은 업체가 신용평가 등급을 요청한 경우 등에 대해 업무 수행시 이들 업무 간 Firewall의 위반가능성 여부,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의 최소화를 위한 업무수행 방법, 그리고 업무수행 사실에 대한 관련정보의 공시 방법 등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신용평가나 부수서비스가 의결사항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평가사업과 타 사업부문 간 분리 - Section 2.5**

당사는 신용평가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평가부문의 조직과 업무처리, 의사결정 등을 타 사업부문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사업부문(마케팅부문)과의 인적 교류도 일정 조건과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논의(Fee discussion) 금지 - Section 2.12**

지정된 특정 부서(또는 인원) 외에 신용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은 수수료 논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용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직원이 수수료 논의에 참여한 경우 당사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업체의 신용평가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익수수의 엄격한 제한 - Section 2.15**

편익수수라 함은 업무와 관련한 거래처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등 재산상의 이익을 수령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가 정한 편익수수금액의 범위 내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내에서 내부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편익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편익수수 관련 내부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이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편익수수의 내용이 내부 규정에서 벗어나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는 관련업체의 신용평가 과정에 6개월의 기간 동안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IOSCO Code(2008.5)	개정 KIS CoPC(2009.8)
2.15 신용평가기관의 임직원들은 자사와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혹은 금전적인 가치가 매우 미미한 선물 외의 선물이나 현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2.15 KIS의 직원은 Moody's Corporation의 Code of Business Conduct에서 명시적으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KIS와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나 개인에게 금품 또는 혜택을 요구하거나 이들로부터 금품 또는 혜택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퇴사자 평가내역 검토 - Section 2.17**

당사는 신용평가 절차에 참여하는 애널리스트가 업무상 상당한 관계가 있었던 발행사 혹은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 해당 애널리스트의 과거 업무의 적절성을 소급하여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애널리스트의 최근 신용평가 업무와 관련한 이해상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등급공시의 투명성 및 적시성

### 평가이력(Rating Action) 및 적용 평가방법론의 명시 - Section 3.6

당사는 이해관계자들이 해당업체의 과거 신용등급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의 신용평가이력(평가일자, 평가종류, 평가등급 및 관련 Action)을 평가의견에 표기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시각적으로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에 적용된 평가방법론이 무엇이고, 그 평가방법론의 내용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이고자 평가의견의 마지막 부분에서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평가방법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대해서도 어떤 주요 Factor들이 검토되었는지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평가방법론의 명시와 관련하여 현재 당사 평가의견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예시한 것입니다.

(예시 1 - 적용된 평가방법론이 있는 경우)

동 평가에는 XX산업 평가방법론을 주요 방법론으로 적용하였으며, 기타 일반 방법론도 평가과정에 참고하였다. 동 방법론 및 기타 방법론은 “ [www.kisrating.com/Research/평가방법론](http://www.kisrating.com/Research/평가방법론) ”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시 2 - 적용된 평가방법론이 없는 경우)

동 평가에는 동사의 신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i) 영업환경 및 경쟁력, ii) 사업안정성, iii) 수익창출력, iv) 재무안정성 및 v) 최대주주인 XX(주)의 지원가능성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서 분석하였다. 상기 요인 이외의 기타 일반 방법론도 평가과정에 참고하였으며, 기타 방법론은 “ [www.kisrating.com/Research/평가방법론](http://www.kisrating.com/Research/평가방법론) ” 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신용평가에 관한 추가 정보 - Section 3.7

당사가 부여한 구조화 금융상품의 신용등급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신용등급이 도출된 논리적 근거를 파악하는데 좀더 도움을 주고자 관련 평가방법론에 현금흐름분석(손실기대치 포함)을 보강해오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발표된 SF부문의 평가방법론 대부분은 현금흐름분석과 관련된 Tool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평가방법론은 당사 홈페이지([www.kisrating.com](http://www.kisrating.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본 보고서 ‘ 평가방법론의 개발 및 갱신, 적용 ’ 참조).

한편, 신용등급의 속성 및 한계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당사 평가의견 ‘ 유의사항 ’ 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본 보고서 ‘ KIS 및 신용등급 개요 ’ 참조).

\* 유의사항 \*

- 1) 신용등급은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의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현재 시점에서의 한국신용평가사의 의견입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란 만기 도래하는 계약상의 채무(financial obligations)를 발행사/기관이 불이행할 수 있는 위험 및 부도시 예상되는 금융손실이라고 정의합니다. 신용등급은 유동성 위험, 시장가치 위험 또는 가격 변동성 등의 여타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용등급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해 진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등급은 투자자문 또는 금융자문을 의미하지 않으며, 특정 증권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 2) 여기 있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신용평가사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떤 정보도 당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특정 목적을 위해서 무단전재되거나 복사 또는 재판매, 유포될 수 없습니다.
- 3) 여기 있는 모든 정보는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원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실수의 가능성 때문에 해당 정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데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이러한 정보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피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이나 평가의견 등은 해당 정보의 사용자나 그 관계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투자결정에 있어서 어떤 증권을 매매하거나 보유하라는 권고나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단지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입각한 당사의 의견으로서만 해석되고 또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투자의사 결정을 위해서 정보 이용자들은 그들이 보유 또는 투자할지 모르는 각 유가증권 및 해당 증권의 발행자와 보증기관, 각 신용보강기관 등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 또는 조사하고 평가를 해 보아야만 합니다.

**Rating Performance 공시 - Section 3.11**

당사는 2004년 ‘부도율 분석(Default Study)’에 이어 2005년 ‘Rating Performance Analysis(1998~2004년)’라는 제목하에 ‘신용등급과 시장수익률간의 비교 및 차이분석’과 함께 부도율 분석, 개별 부도기업 및 신용등급 변동현황 등에 관해 통계적 자료를 포함하는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의 시기와 분야를 연간 단위에서 분기단위로, 회사채(Bond)에서 기업어음(CP), ABS 분야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이나 금융감독당국이 당사가 부여한 신용등급의 performance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성과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시계열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해의 폭을 보다 넓히기 위해 시장에서 검증 가능한 계량화된 통계기법 등에 따른 결과 등을 표준화된 체계를 갖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performance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부적으로는 등급의 일관성(Consistency)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는 투자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당사가 공시하고 있는 Rating Performance 관련 보고서 목록이며, 각 보고서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israting.com/Research](http://www.kisrating.com/Researc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IS Rating Performance 관련 보고서 현황]

보고서	대상	주요 내용
Bond Rating Performance	1998년 이후 분석 연도까지 장기간의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 추이에 관한 분석(연 1회)	-부도율 분석: 연간부도율 및 부도율의 변동성, 평균누적부도율, 부도기업 분석 등 -신용등급 변동현황 분석: 등급분포, 연도별 등급변동 추이, 신용등급 변화표(전이행렬) 등 -Outlook과 Watchlist 분석
CP Rating Performance	1998년 이후 분석 연도까지 장기간의 기업어음 신용등급 추이에 관한 분석(연 1회)	-최근 기업어음 시장동향 -기업어음과 회사채 등급간 상관관계 분석 -신용등급 변동현황 -부도율 분석
ABS Rating Performance	2000년 이후 장기간 또는 연간 기준 자산유동화증권(ABS) 시장현황 및 신용등급 추이에 관한 분석(연 1회)	-최근 자산유동화증권시장 동향 -신용등급 변동현황 및 신용등급 변화표(전이행렬) -부도율 및 부도기업 분석
신용등급과 시장수익률간의 차이분석	당사 신용등급과 해당 채권의 시장수익률(BIR)의 추이 및 차이 등에 대한 원인 분석(연 2회-상/하반기)	-회사채 시장동향 -신용등급과 BIR 비교 및 차이분석 -주요 차이발생 업체 분석
회사채 신용등급 변동현황	분기 단위로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 추이에 대한 결과 분석(연 4회)	-신용등급 분포 -등급변동 현황 -Outlook과 Watchlist 현황

### III. KIS CoPC와 IOSCO Code의 차이

#### Section 1.8 - 애널리스트에 대한 교육

IOSCO Code(2008.5)	개정 KIS CoPC(2009.8)
(대응하는 IOSCO Code 없음)	1.8 KIS는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및 관리한다. 당해 프로그램의 이행 및 감독을 위해 1인 이상의 적절한 담당직원을 지정한다.

당사는 IOSCO Code와는 상관없이 애널리스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평가사로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신용평가

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애널리스트는 통상적으로 연간 2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담당업무에 따라 연간 교육 이수 시간은 달라지지만-토록 하고 있으며, 회사의 정책 방향과 애널리스트 개인별 관심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내·외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Section 3.7(b) - 구조화 금융상품에 대한 별개의 신용등급체계**

IOSCO Code(2008.5)	개정 KIS CoPC(2009.8)
<p>3.5(b) 신용평가기관은 가급적 다른 기호 표기(symbology)를 통해 구조화 금융 상품의 신용평가를 전통적인 회사채 등급과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이 구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function)를 공개해야 한다. 신용평가기관은 신용 등급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기호를 부여 받은 모든 종류의 증권에 일관되게 적용한다.</p>	<p>3.7(b) KIS는 현재 구조화 금융상품의 신용등급과 기타 자산에 부여하는 신용등급에 별개의 등급 체계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만약 KIS가 구조화 금융상품 신용등급에 대해 별개의 등급 체계를 채택하게 된다면 (i) 그러한 사실을 시장에 공표하는 동시에 (ii) 별개의 등급기호의 이용방법과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할 것이다. KIS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등급 기호에 대한 정의는 KIS의 홈페이지(<a href="http://www.kisrating.com">www.kisrating.com</a>)에 공시되어 있다.</p>

IOSCO Code 개정에서는 구조화 금융상품의 등급체계를 그동안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회사채 등급과 구분하는 것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존 등급체계에 기반한 거래관행의 정착, 별도의 등급체계 간 차별화의 어려움, 시장참여자들의 부정적 의견 등을 감안하여 당사는 현재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별개의 등급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질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IOSCO Code의 내용을 ‘만약 별개의 등급체계를 채택하게 되는 경우’ 라는 조건부 형식으로 KIS CoPC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